2021. 12

한국형 K-TAXONOMY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1. 12

한국형 K-TAXONOMY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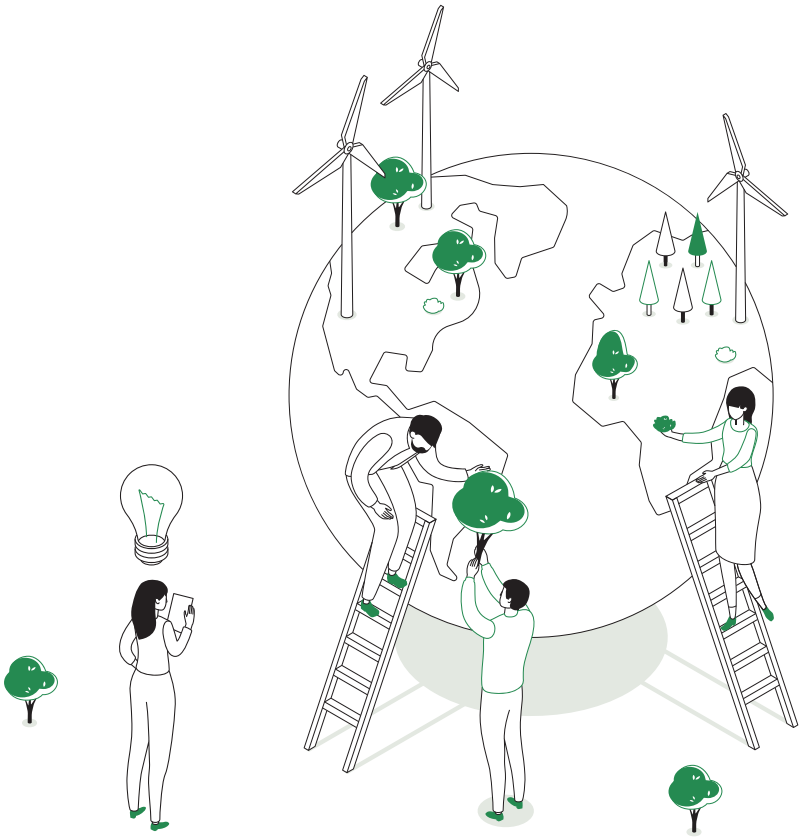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06
2. 개발과정 08
3. 개념 및 원칙 09
4. 적용 대상 및 판단 단위 10
5.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13
6. 적합성 사후관리 모니터링 15
7. 활용방안 16
8. 향후계획 17

제2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 22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제1절 녹색부문 36

제2절 전환부문 100

붙임

붙임 1~6. 공통 배제기준 108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 121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12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원칙
4. 적용 대상 및 판단 단위
5.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6. 적합성 사후관리 모니터링
7. 활용방안
8. 향후계획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함은 물론 저탄소 회복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 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분류체계는 유럽연합,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향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대상 경제활동과 기준은 국제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개발과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녹색분류체계, 중국 녹색채권보증 카탈로그를 검토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은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 환경개선 영향, 측정과 판단 가능성, 국내 산업 특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개발되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해 2020년에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공기업, 민간기업, 신용평가사, 컨설팅사, 한국거래소, 정부부처 등 24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술적 기준의 개발을 위해 에너지, 수송·물류, 건축물, 생태계, 물, 오염관리, 자원순환 등 각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1차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4월 말 범부처 의견수렴과 동시에 2021년 5월 12일, 13일, 17일, 총 3일에 걸쳐 1차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금융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차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6월 8일 2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50여 개 산업계, 금융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 의견수렴은 6월 28일 설명회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금융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차 의견수렴에 대한 수용 방향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8월 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3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업종별 10개 부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19일, 23일, 24일, 25일, 27일, 31일, 9월 1일, 총 7일에 걸쳐 4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10월 20일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4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5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3. 개념 및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 6대 환경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개념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3)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국제동향(EU Taxonomy, ISO Taxonomy 등)의 6대 환경목표 준용

4. 적용 대상 및 판단 단위

(1) 녹색경제활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농업,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자원순환, 메탄가스 활용), 오염(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분야로 구분되며, 총 64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6%로 그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배출량이 59%에 달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나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계열 내 최상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다배출 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도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녹색분류체계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조 활동을 녹색활동으로 포함하였다.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정한 제품 벤치마크 상위 10%의 평균값을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배출 업종이지만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철강·시멘트·유기화학 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5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경우 유럽연합 등에서 녹색경제활동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 중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나 유럽연합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며, 업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20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2025년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025년 전과정평가 도입 시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별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및 단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로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투자하게 되는 '녹색프로젝트'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한 프로젝트에 한정한다. 나아가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향후 자산 단위(예 : 생산설비, 사업 부문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과 프로젝트 단위 등을 종합하여 기업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투자 대상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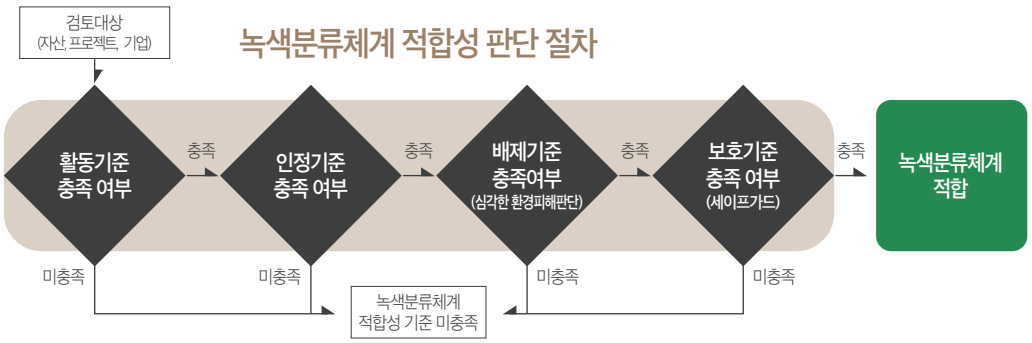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가 될 것이다. 한편, 운영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운영자금에 제공한 여신 규모에,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곱한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산정될 수 있다.

(3) 적용 단위별 적합성 판단 결과의 활용(예시)

- **프로젝트 단위** : 재생에너지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 **자산 단위** : 생산시설 등 특정 자산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 **기업 단위** : 기업 전체의 매출액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충족하는 녹색 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매출 비중, 연간 자본지출 중 녹색 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투자 규모·지출 비중 등

5.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1)]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위의 인정기준 및 배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환경법,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 목록은 제2장, 적합성 판단기준은 제3장 참고

[참고]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판단)의 사례

에너지	•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 냉각 관련 물 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 •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 불법 벌채 또는 연료 가공·수송 과정에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제조업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 무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건축물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 • 불법 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
수송·물류	• 무공해 자동차·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 문제 •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토양 오염
물	•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
자원순환	•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 기준 초과
농업 및 생물다양성 보전	•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악화 • 외래식물의 채취 시 종자의 대기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악영향 등

6. 적합성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합성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이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인정·배제·보호기준 또는 관련 환경 법규의 위반으로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적합성 기준, 환경 법령 및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판단기준 충족 유지 여부,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활용방안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매출액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중 특정 사업 부문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전체 사업 부문(예 : 생산설비, 사업 부문 등) 중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부문 또는 관련 자산의 규모와 비중(예 : 매출액 규모 기준 비중, 자산규모 기준 비중 등)을 산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 비중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적합성 판단 결과 및 비중 정보공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향후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예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시장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녹색금융에 본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와 관련된 자산 비중, 매출액 규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 녹색채권 발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례 (제조기업A)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A는 (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공장 증설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나) RE100(Renewable Electricity)에 대응하고자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녹색채권 발행, 조달자금의 사용처,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숙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녹색채권에서 투자하는 녹색 프로젝트의 종류와 기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업A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녹색채권으로 확보될 재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가)~(나)의 사업 모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활동기준, 인정·배제기준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가) 에너지저장장치 및 (나) 태양광 발전 관련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최신형 저탄소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적합성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 외에도 전기를 수소와 암모니아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후 두 사업의 사업 설계 기준을 친환경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인정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기후변화 적응, 물, 오염,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된 환경 법규 등을 파악하며 법규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A는 제3자 인증기관 등과 함께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가), (나) 사업에 투자했다.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도 매년 조달자금의 사용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효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과 관련 환경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보고를 통해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했다. 기업A는 이를 통해 녹색채권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녹색채권 발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례 (금융기관B)

금융회사B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투자자로부터 녹색금융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이 금융회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활동 목록을 검토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무공해 차량 및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및 기술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후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만들었으며, 녹색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홍보했다.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해왔다. 이 금융회사는 찾아오는 기업들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사업의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정보 제공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매년 조달자금의 사용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효과,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 관련 환경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 대중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B도 매년 녹색채권 연례보고서 발행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거둔 환경개선 성과와 산업계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고객과 투자자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얻게 됐으며, 투자자들로부터도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에 문의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gmi.go.kr)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

절

절-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지향단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제1절 녹색부문, 제2절 전환부문으로 구성

조

조-유형 6대 환경목표를 분류하는 것으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 4. 순환경제, 5. 오염, 6. 생물다양성으로 구성

항

항-분야 유형 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묶은 것으로, 14개 분야로 구성

호

호-경제활동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목

목-판단기준 판단기준을 분류하는 것으로, ① 활동기준, ② 인정기준,
③ 배제기준, ④ 보호기준으로 구성

제2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6)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7 참조)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5)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6) 수소환원제철, (7) 비탄산염, (8) 혼합시멘트, (9)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10) 제로에너지 건축, (11)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12) 바이오차(Biochar), (13)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7 참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항(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과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한 가스
	(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8)	수소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9)	암모니아 제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나. 발전·에너지	(10)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4)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5)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P2H; Power to Heat)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1)	열에너지 저장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예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12)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 (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13)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4)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15)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16)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선박을 도입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의 충전,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도선, 여객 철도 포함
	(3)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 또는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철도차량을 도입하거나 관련 차량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택시,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택배, 화물트럭 등 포함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다. 수송	(4)	무공해 선박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선박을 도입하거나 무공해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여객 또는 화물의 (1) 육상, 철도 운송에 필요한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운송 인프라 또는 (2) 수상 운송에 필요한 육상전원 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수상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식량,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조건에서 300~350℃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써,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사. 연구개발	(1)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적응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물공급,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1) 교육, (2) 문화·예술 활동
	(4)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및 중·장기적 노동 전환 산업군(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재직자 대상 특화훈련 과정 제공,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 활동,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에 따른 작물 변경 교육 등
제1절 녹색부문 : 3. 물			
가. 물	(1)	하·폐수 관리	하수, 폐수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2)	저영향 개발(LID)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는 설비 또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물 공급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 원수를 취수, 정수하여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나, (2) 급수 취약지역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3. 물			
가. 물	(4)	대체 수자원 활용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빗물 활용,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5)	물 수요 관리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 정비 또는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6)	물 재이용	물 재이용 시설(하수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7)	지하수 정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4. 순환경제			
가. 자원 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폐자원 재활용 (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1)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2)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 (3)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재생이용(폐유 정제유, 폐금속 재자원화, SRF,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원료 등), (4)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활용, (5)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폐자원 열분해	폐자원을 열로 분해하여 원료 또는 연료를 만들거나, 그 원료 또는 연료를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메탄 가스 활용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에너지, 연료, 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5. 오염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하는 활동(석탄발전소 관련 사업 제외)
	(2)	악취 방지 및 저감	악취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 6. 생물다양성			
가. 생물 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
	(2)	산림 생태계 복원	훼손지·산림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 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활동
	(4)	생물종 보호·보전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

분야(항)	경제활동(호)		설명
제2절 전환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나. 발전· 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30~35년까지 인정
	(2)	액화천연가스 (LNG) 기반 수소 (블루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친환경 선박 운송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I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제1절

녹색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36
(2)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37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38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39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40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41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42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43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44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45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46
(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47
(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48
(8) 수소 제조 49
(9) 암모니아 제조 50
(10)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51
(11) 열에너지 저장 52
(12)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53
(13)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54
(14)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55
(15)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56
(16)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57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58
(2)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59
(3)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60
(4) 무공해 선박 운송 61
(5)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62
(6)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63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64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65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66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67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68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69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70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71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72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73

사. 연구개발
(1)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74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적응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75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76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77
(4)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78

3. 물

가. 물

(1) 하·폐수 관리 79
(2) 저영향 개발(LID) 80
(3) 물 공급 81
(4) 대체 수자원 활용 82
(5) 물 수요 관리 83
(6) 물 재이용 84
(7) 지하수 정화 85

4. 순환경제

가. 자원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86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87
(3)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88
(4) 폐자원 열분해 89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90

나. 메탄가스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91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92

5. 오염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93
(2) 악취 방지 및 저감 94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95

6. 생물다양성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96
(2) 산림 생태계 복원 97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98
(4) 생물종 보호·보전 99

제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100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01

(2)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102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103

(2) 친환경 선박 운송 104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제1절 녹색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① 활동기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6)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7 참조)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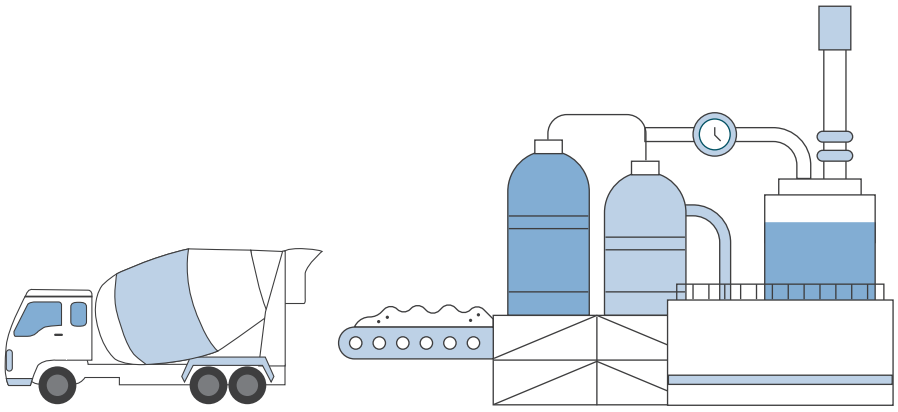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5)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6) 수소환원제철, (7) 비탄산염, (8) 혼합시멘트, (9)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10) 제로에너지 건축, (11)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12) 바이오차(Biochar), (13)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붙임7 참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에 존재하는 경우 관련 적합성 판단기준을 준수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73192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814805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88012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07898톤 CO_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마.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제철 설비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가? * 상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은 ISO 14030-3에 따른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예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신설·증설·개조하려는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780697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85256톤 CO_2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방향족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37361톤 CO_2eq./원료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부타디엔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75599톤 CO_2eq./원료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71197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항(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신설·증설·개조하는 사업이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일시에 감축시키는가? *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정·설비의 내용연수(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감축량을 설정하며, 이때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예시 : 내용연수가 10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24%(=10년×△2.4%), 내용연수가 5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12%(=5년×△2.4%) 이상 일시에 감축) ※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또는 CDM 방법론 또는 ISO 14064-2)에 따름 ※ 기존 시설을 증설·개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름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수상 태양광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점검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가?	☐
	(3) 풍력 중 해상풍력발전 및 (5) 해양에너지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협의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협의 의견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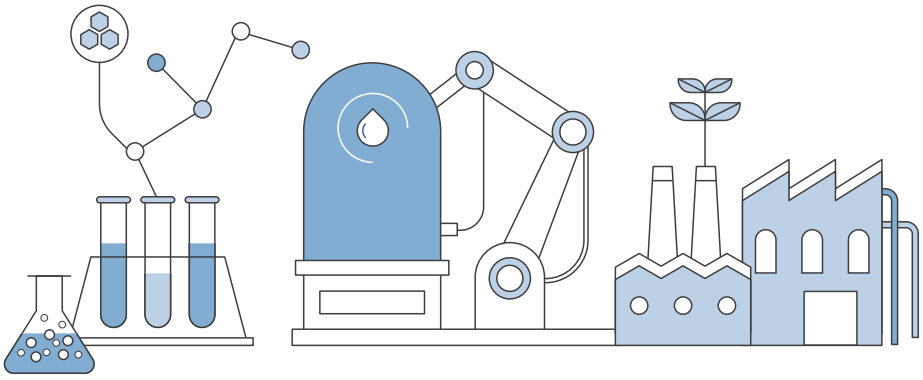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이용하는 바이오매스가 '1-나-(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_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이용하는 바이오가스가 '1-나-(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의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유압가스배관에 긴급차단밸브[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동급기준 이상]를 설치하고, 보일러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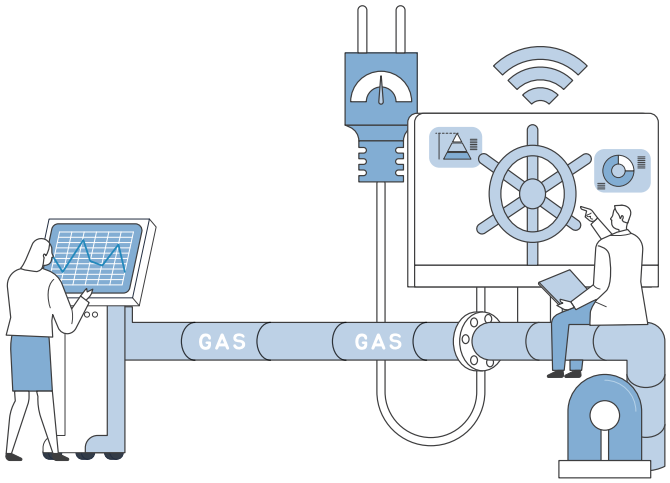
(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직경계" 밖에서 "조직경계" 내로 공급된 연료가 수소 또는 암모니아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과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한 가스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_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6)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다. (3)의 경우 정압관리소 등에서 압력차로 발생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감압(폐압)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7)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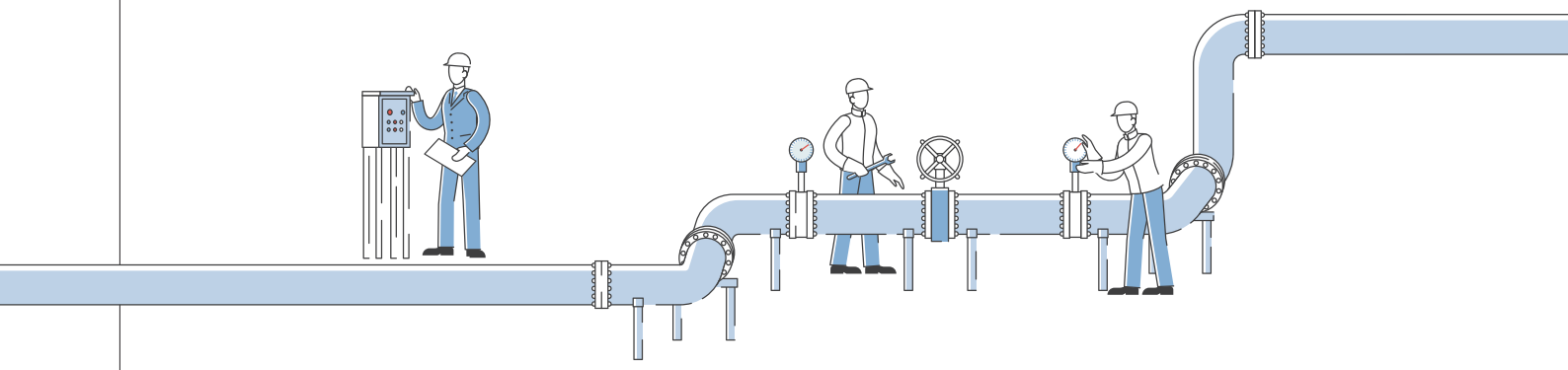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바이오매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를 제조하는가?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을 획득한 원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나. (바이오가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가? ※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확보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4-나-(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활용하는 경우 '4-나-(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를 제조하는가? ※ 천연림, 이탄지, 습지 벌채나 30㏊ 이상 면적의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 등 환경파괴가 발생한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8) 수소 제조

① 활동기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 등 혐기성 소화를 통해 확보된 메탄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나-(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나-(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다. '1-나-(9)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9) 암모니아 제조

① 활동기준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나-(8)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소를 활용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회수,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10)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① 활동기준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4)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5)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P2H; Power to Heat)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하였는가?	☐
	나. (2)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펌프 등으로 양수발전 등을 위한 위치에너지(수력)로 전환하는 활동인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다. (3) 생산된 전력을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경우 '1-나-(8) 수소 제조'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라. (4) 생산된 전력을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경우 '1-나-(9) 암모니아 제조'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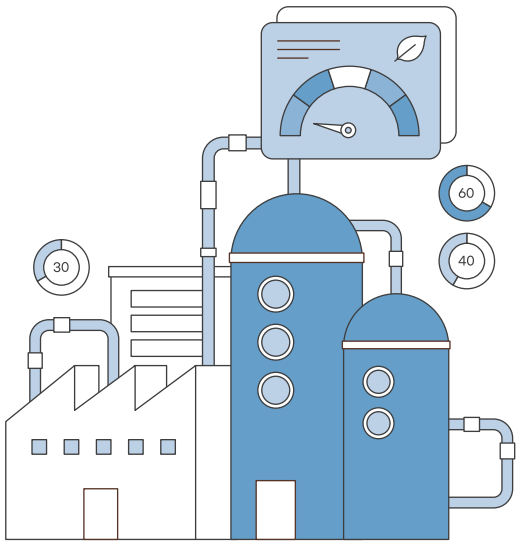
(11) 열에너지 저장

① 활동기준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예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 (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12)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① 활동기준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 (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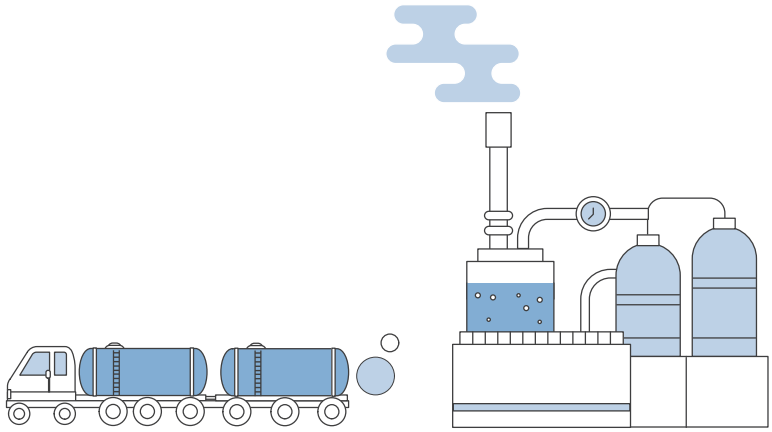


(13)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1) '1-나-(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또는 (2)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1-나-(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14)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① 활동기준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탱크로리 또는 선박을 통해 이송하는 경우 '1-다-(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으로 이송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15)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① 활동기준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16)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나. 발전량 예측, 발전소 유지관리 등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전기시스템의 통제·모니터링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라.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의 충전이나 충전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마.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수요자원거래기술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해당 없음	
물	해당 없음	
오염	해당 없음	
자원순환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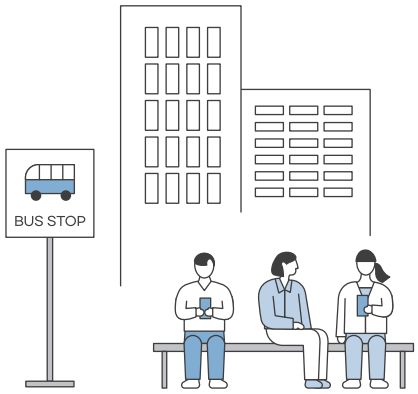
다. 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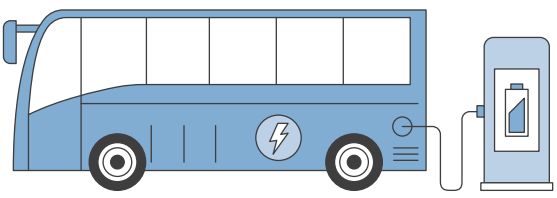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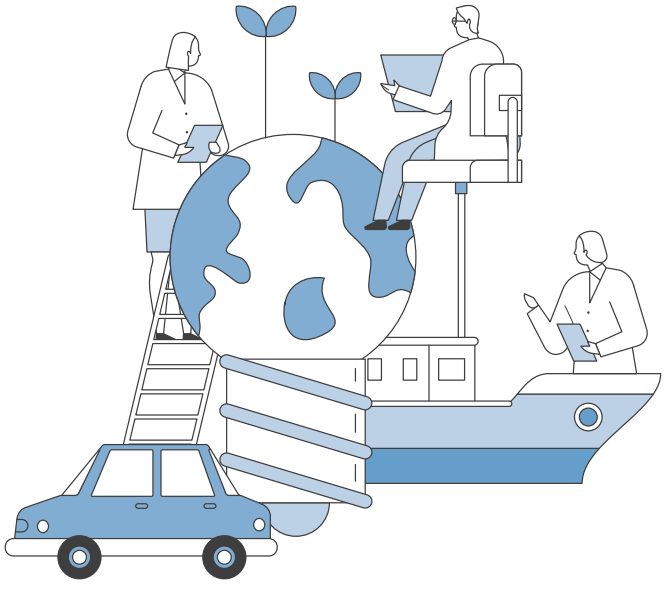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선박을 도입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의 충전,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선, 도선, 여객 철도 포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① 활동기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 또는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철도차량을 도입하거나 관련 차량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택시,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택배, 화물트럭 등 포함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무공해 선박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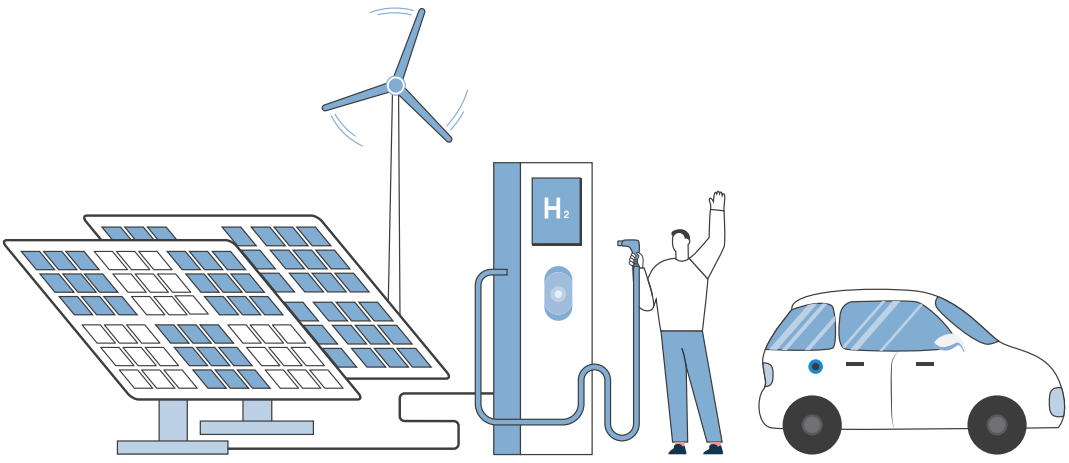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선박을 도입하거나 무공해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여객 또는 화물의 (1) 육상, 철도 운송에 필요한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운송 인프라 또는 (2) 수상 운송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수상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6)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① 활동기준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도시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
	나. (2)의 경우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이며, 사업계획 대상 면적 기준 최근 3년 평균 대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 절감비율이 20% 이상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모든 수도설비(수도꼭지, 변기)는 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절수기기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사용용도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① 활동기준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활동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였고 준공 이후 본 인증을 취득하였는가(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른 관공서, 병원, 학교, 운수시설 등	☐
	나. 기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으로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였고 준공 이후 본 인증을 취득하였는가(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모든 수도설비(수도꼭지, 변기)는 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절수기기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건축물 내에 우수재활용 인증(GR마크)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설비(예 : 단열,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를 설치하는 활동인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설치하는 활동인가?	☐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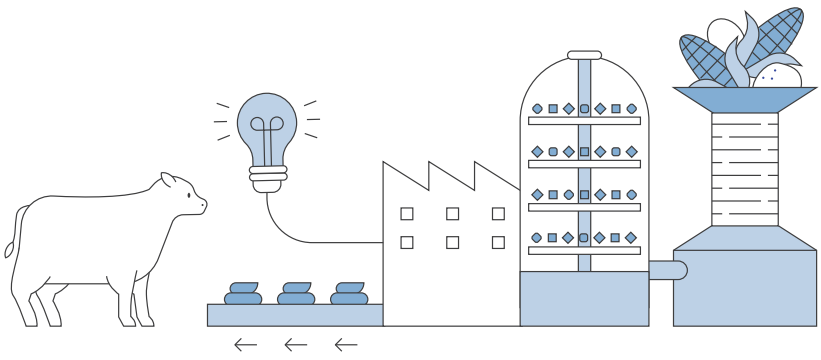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① 활동기준		
식량,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범위 내에 있는가?	☐
	비료가 인근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를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살포하고 있는가?	☐
	농약이나 가축분뇨, 액비 등이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기, 유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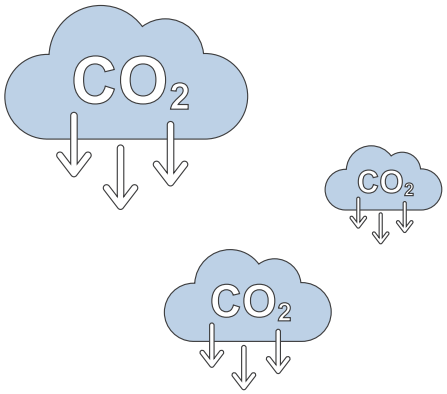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① 활동기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누출 감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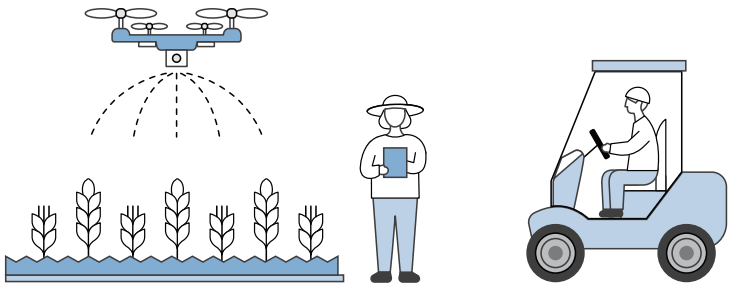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① 활동기준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해양에 격리할 경우, 관계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해양환경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적법한 압력으로 처분 또는 영구격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따름	☐
	토양에 격리할 경우, 관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① 활동기준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조건에서 300~350℃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써,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사. 연구개발

(1)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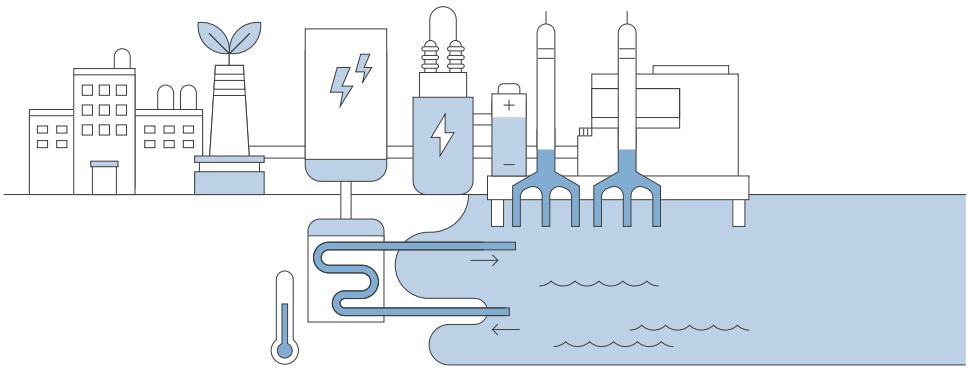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	☐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 *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E-fuel,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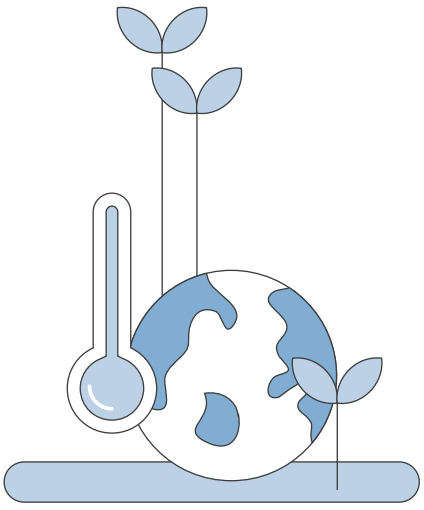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물공급,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해당 활동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의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가? * (1)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2)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5)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6)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7)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8)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	해당 없음	
오염	해당 없음	
자원순환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1) 교육, (2) 문화, 예술 활동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가. (1)의 경우 우수 환경교육으로 인증 받았는가?	☐
	나. (2)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	해당 없음	
오염	해당 없음	
자원순환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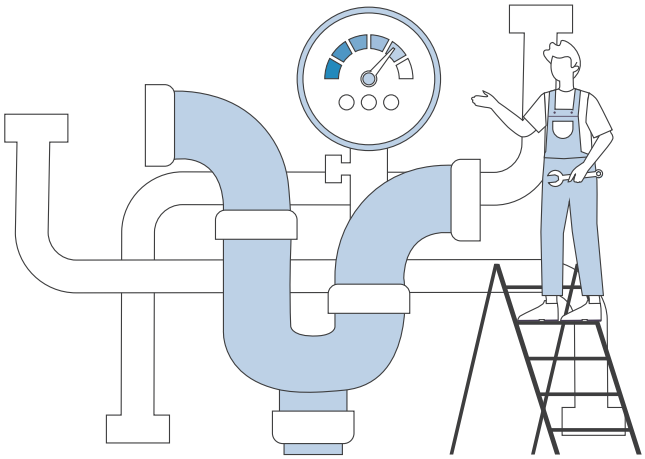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및 중·장기적 노동 전환 산업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재직자 대상 특화훈련 과정 제공,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 활동,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에 따른 작물 변경 교육 등		☐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	해당 없음	
오염	해당 없음	
자원순환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물

가. 물

(1) 하·폐수 관리

① 활동기준		
하수, 폐수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저영향 개발(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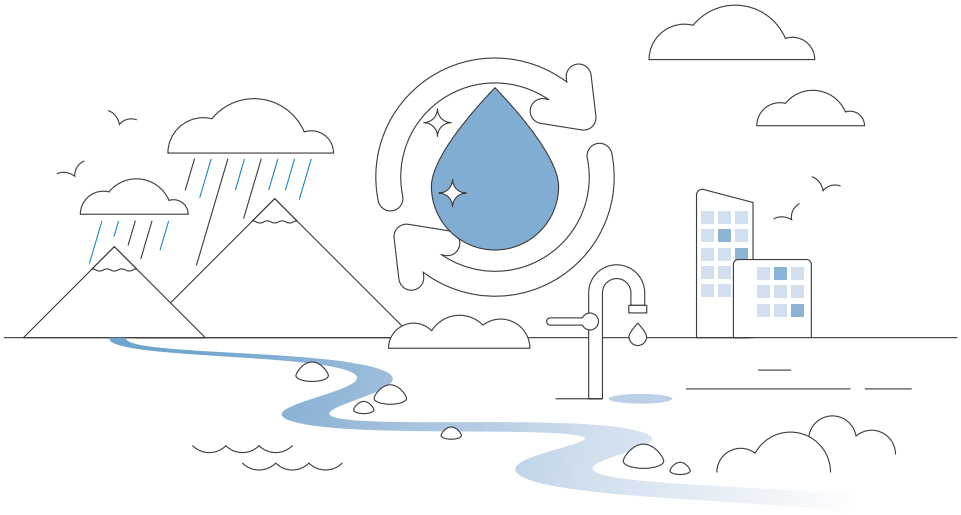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는 설비 또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물 공급

① 활동기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 원수를 취수, 정수하여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나, (2) 급수 취약지역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1)의 경우 취수부터 집수, 정수, 급수까지 전 과정에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0.5kWh/m^3 이하로 설계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또는	☐
	기존(최근 3년 평균)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20% 이상 감소하도록 설계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대체 수자원 활용

① 활동기준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빗물 활용,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물 수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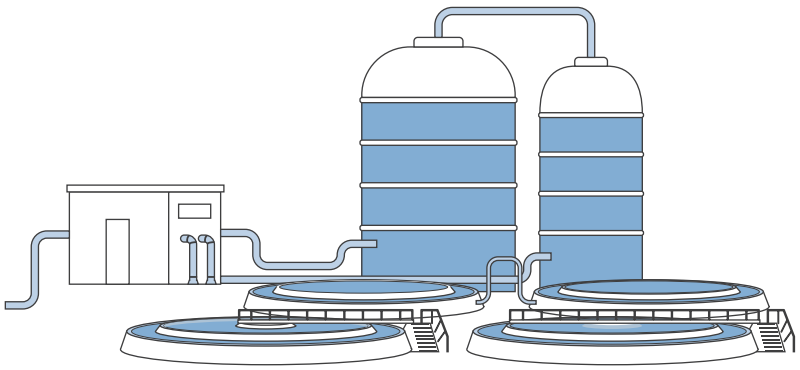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 정비 또는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가. (1)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나. (2)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6) 물 재이용

① 활동기준		
물 재이용 시설(하수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7) 지하수 정화

① 활동기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물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순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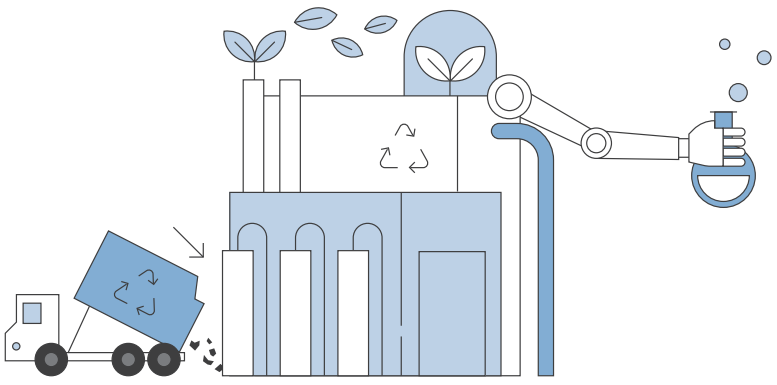
가. 자원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① 활동기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① 활동기준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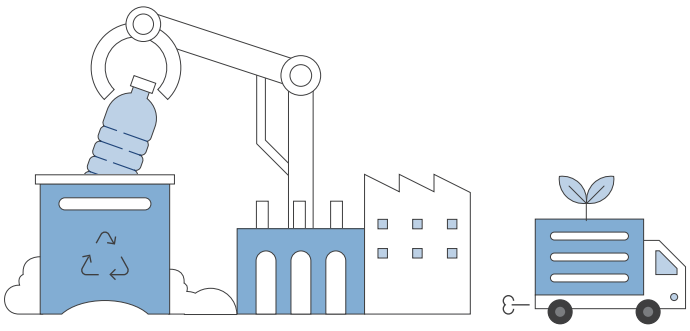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1)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2)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 (3)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재생이용(폐유 정제유, 폐금속 재자원화, SRF,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원료 등), (4)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활용, (5)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 재활용 승인을 취득·유지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수거·회수하고 있는가?	☐
	고형연료제품(SRF)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10)에 따른 폐기물의 혼합 및 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폐자원 열분해

① 활동기준		
폐자원을 열로 분해하여 원료 또는 연료를 만들거나, 그 원료 또는 연료를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폐자원의 열분해를 통해 확보된 원료, 연료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원료, 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그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① 활동기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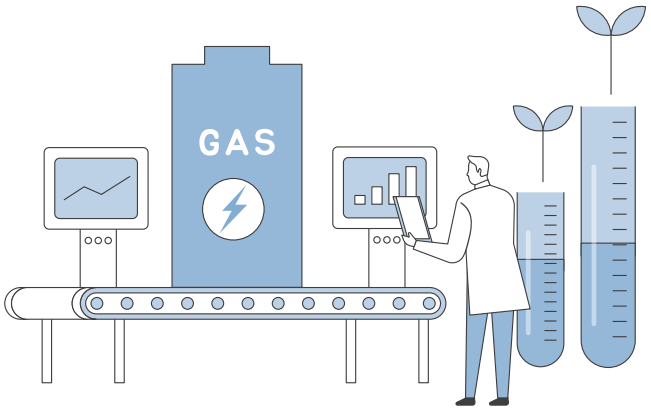
나. 메탄가스 활용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① 활동기준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① 활동기준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에너지, 연료, 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5. 오염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하는 활동(석탄발전소 관련 사업 제외)		☐
② 인정기준		
오염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장비, 시설인가?	☐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악취 방지 및 저감

① 활동기준		
악취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자원순환	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통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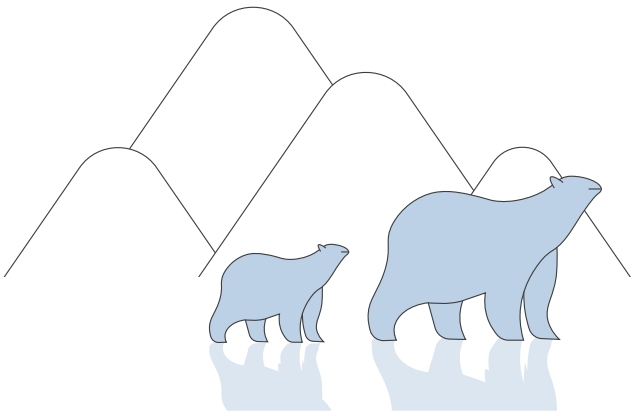
① 활동기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오염	가.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는가?	☐
	나. 해양오염방제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등의 배치 등 기름의 해양 유출사고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	☐
	다. 오염물질을 방제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술요원, 선박·장비 및 설비 등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6. 생물다양성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① 활동기준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복원 공사, 사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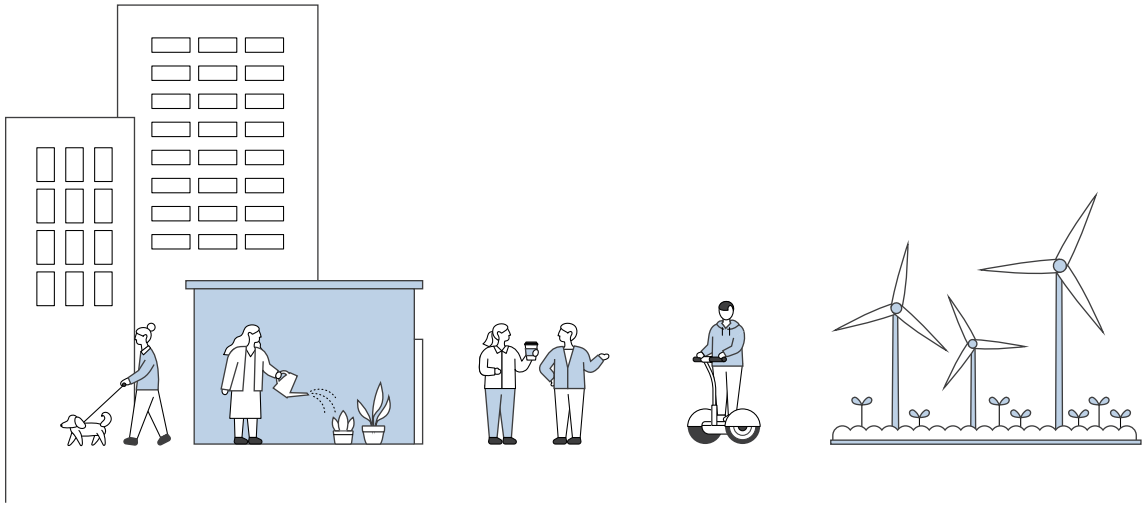


(2) 산림 생태계 복원

① 활동기준		
훼손지·산림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① 활동기준		
탄소 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도시 내 숲 조성 등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생물종 보호·보전

① 활동기준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		☐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생물·해양보호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보전하거나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제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① 활동기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30~35년까지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_2eq./kWh 이내(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에 해당하는가? 나. 설계 수명 기간(design lifetime) 동안 평균 250g CO_2eq./kW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① 활동기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준을 충족 ※ 수소법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 시 관련 기준 재검토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① 활동기준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2) 친환경 선박 운송

① 활동기준		
여객 또는 화물의 수상 운송을 위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제2절 전환부문 1-다-(1) 친환경 선박 건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자원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붙임

붙임1 배제기준 - 온실가스 감축

부속서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ㅇ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목적 달성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큰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가능하면 경제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ㅇ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 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은 화석연료의 제조, 채굴, 저장, 운송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붙임2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부속서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폭우, 가뭄,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후 영향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 저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기간 동안 아래 표의 분야별 물리적 기후위험에 해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기후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해당 기후리스크 목록 표와 관련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한다.

※ 14대 분야 중

1. 산업, 발전·에너지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2. 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3. 도시·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4. 농업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④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5. 자원순환 및 메탄가스 활용 분야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6.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7. 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 분야 10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8. 생물다양성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④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9. 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방지 및 처리 분야 경제활동은 해당 없음

<우리나라 기후리스크 목록(6대 부문 84개 리스크) 중 일부>[1)]

① 물관리(10개)	해당여부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피해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	(예시) ×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예시) ×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예시) O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② 생태계(18개)	**해당여부**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식물 (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아고산대 (종, 생육, 분포) 변화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 종(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외래, 해적 생물 등) 증가 및 질병 증가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예시) ×
이상기후로 인한 생물 종 및 개체수 증가	(예시) ×
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척추, 무척추 동물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에 따른 담수생물 (동물, 식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 생물 (아고산 식생, 침엽수, 북방계 식물, 보호식물 등 포함) 서식지 변화	(예시) ×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변동, 가뭄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 변화	(예시) ×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면적 감소, 육화 및 생물상 변화	(예시)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 생태계 변화	(예시) O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예시) O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p211

③ 국토·연안(14개)	해당여부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위험성 증가	(예시)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범람 위험 증가	(예시) ×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예시) ×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증가	(예시) ×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중단 및 사고 증가	(예시) ×
기온 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현상 증가	(예시) O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강풍, 폭우, 폭설)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 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폭우, 강풍, 폭설, 폭염)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피해 증가	(예시) O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배수시설 기능 저하	(예시) ×
폭설, 강풍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 파손 증가	(예시) ×
폭염으로 인한 주거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예시) ×
④ 농수산(17개)	**해당여부**
극한사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품질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	(예시) ×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변화	(예시) ×
폭염, 기온 상승 및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예시) ×
폭염, 저산소화, 한파, 태풍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예시) ×
해수온 상승 및 저산소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화	(예시)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예시) O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시설(축사, 온실) 피해 증가	(예시) O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예시) ×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병	(예시) O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시) ×
가뭄 및 기온 변화로 인한 농업수리시설의 수자원 공급 안정성 증가 및 수질 저하	(예시) ×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예시) ×
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농기계 활용 저하	(예시) ×
해양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예시) ×

⑥ 산업·에너지(12개)	해당여부
폭염, 한파, 폭우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 감소	(예시) ×
강풍으로 인한 생산시설 피해	(예시) ×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건설업 피해 증가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풍으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 위험	(예시) ×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가뭄으로 인한 관광객 및 매출 감소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예시) ×
강풍 및 태풍 시 태양광발전 설비 손상	(예시) O
기온 상승, 강우량 증가, 바람 패턴 변화로 인한 풍력발전 변동성 심화 및 풍력자원 유효지의 이동	(예시) O
해일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발전소 안정성 약화	(예시) O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강풍으로 인한 송전/변전 효율 저하 및 시설 손상	(예시) O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 증가	(예시)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정전 위험	(예시) O

붙임3 배제기준 -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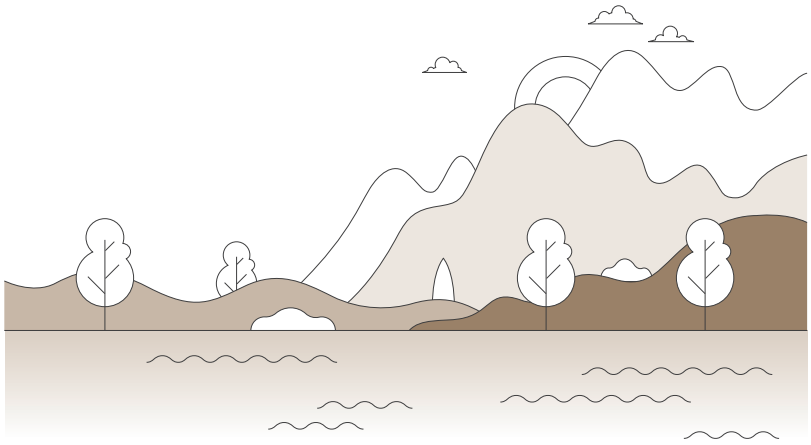
부속서 3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1]에서 금지한 행위[2]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한다.

○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4], 환경영향평가[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6], 「지하수법」에 지하수영향조사[7],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영향평가[8]를 수행하여 수자원과 해양자원과 관련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리스크가 관리되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3)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 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행위 등 제한

4)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5)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6)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한다.

7)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 단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의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해역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6을 참고한다.

붙임4 배제기준 - 오염

부속서 4 오염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1]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2]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 및 그 화합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 오존층 파괴물질 해당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4] 준수 여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여부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한다.

2)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환경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한다.

3)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4) 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기준 준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에 대한 기준 준수

붙임5 배제기준 - 자원순환

부속서 5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 생산시설의 경우 가능 시 내구성이 좋고, 개조 및 해체 시 재활용이 용이한 장비 및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제조 경제활동의 경우 가능하면 제품, 부품 등 대상 재사용 가능한 기술 및 디자인을 채택하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폐기물 관리를 한다.

○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용되는 자원순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붙임6 배제기준 - 생물다양성

부속서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9.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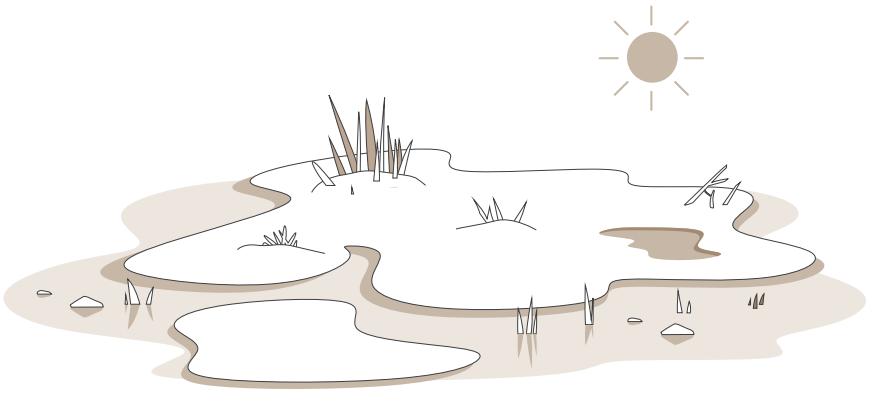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 · 지질 · 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 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 · 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아래 해역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
 -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 (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4.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6.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1]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2], 환경영향평가[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4] 대상으로 지자체, 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시 사업 착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4)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한다.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뉴딜 혁신품목

그린뉴딜 투자 대상 품목				녹색분류체계 대상 여부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첨단제조 자동화(A)	신제조공정 (A01)	3D머신비전	A01001	X
		3D프린팅	A01002	X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4	○
		지능형기계	A01009	○
		4D프린팅	A01014	X
		지능형 4D스캐닝	A01015	X
	로봇 (A02)	미래형 제조로봇	A02003	X
		스웜로보틱스	A02005	X
	차세대 동력장치 (A04)	첨단철도	A04001	○
		전기차/하이브리드	A04002	△ (전기차만 포함)
		스털링엔진	A04003	X
		스마트카	A04004	X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A04005	△ (전기차만 포함)
		고효율/친환경 선박	A04006	△ (무공해선박만 포함)
		스마트모빌리티	A04008	○
		수소전기자동차	A04009	○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A04010	○
화학·신소재(B)	바이오소재(B07)	생물유래소재	B07001	○
에너지(C)	신재생 에너지 (C10)	태양전지	C10001	○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C10002	○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 농산, 산림 포함)	C10003	○
		지열발전	C10004	○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C10005	○
		도심형 풍력발전	C10006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10008	○
		대형풍력발전시스템	C10009	○
		수열발전	C10011	○
		수소에너지 (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C10012	△ (생산의 경우, '1-나-(8)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그린뉴딜 투자 대상 품목				녹색분류체계 대상 여부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에너지(C)	친환경발전 (C11)	연료전지	C11002	△ (1-나-(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초임계CO_2발전시스템	C11003	X
		에너지하베스팅	C11004	○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C11005	△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가스 터빈만 포함)
	에너지저장 (C12)	정압식압축공기저장	C12001	○
		에너지저장장치(ESS)	C12002	○
		에너지저장클라우드	C12003	○
		에너지가스변환	C12004	△ (수소, 암모니아 가스변환만 포함)
		리튬이온배터리	C12005	○
		양성자전지	C12006	○
		슈퍼커패시터	C12007	○
		냉온에너지저장	C12008	○
		바이오배터리	C12009	○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C12010	○
		레독스 흐름전지	C12011	○
	에너지효율향상 (C13)	가정용에너지관리	C13001	○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C13003	△ (친환경에너지타운 제외)
		폐열회수	C13007	○
		독립형해수담수화	C13009	○
		지능형공조시스템	C13010	○
		분산에너지시스템	C13015	○
		스마트그리드	C13016	○
		가상발전소	C13019	○
환경·지속가능(D)	스마트팜 (D14)	농업미생물	D14004	○
		생물비료	D14006	○
		곤충사육	D14008	○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D14009	○

그린뉴딜 투자 대상 품목				녹색분류체계 대상 여부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환경·지속가능(D)	환경개선(D15)	정삼투	D15001	○
		바이오필름수처리	D15002	○
		친환경공조시스템	D15005	○
		기름유출방제	D15007	○
		대기오염관리	D15008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D15010	○
		토양정화	D15011	○
		원전플랜트 해체	D15012	X
		통합환경관리서비스	D15013	○
		자원효율관리서비스	D15014	○
		친환경 패키징	D15015	△ (생분해 포장재 제외)
		유니소재화 제품	D15016	○
	환경보호(D16)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6001	○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D16002	○
		방사성폐기물 처리	D16003	X
		폐자원에너지	D16004	○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D16005	○
		소음관리	D16006	○
		실내공기질 관리	D16007	○
		도시광산	D16008	○
		재제조	D16009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6010	○
건강·진단(E)	친환경소비재(E18)	유전자화장품	E18001	X
	차세대치료(E19)	개량신약	E19013	X
		혁신신약	E19014	X

그린뉴딜 투자 대상 품목				녹색분류체계 대상 여부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정보통신(F)	실감형콘텐츠(F28)	스마트홈	F28005	○
전기전자(G)	차세대반도체(G32)	전력반도체소자	G32003	○
	능동형조명(G35)	OLED(LED)조명	G35001	○
		스마트조명	G35002	○
센서·측정(H)	객체탐지(H38)	비접촉모니터링	H38006	X

디지털 뉴딜 관련 공동기준 품목				녹색분류체계 대상 여부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원격검침 인프라	C13008	○
정보통신	지능형데이터분석	재난안전관리시스템	F30005	○

붙임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폐기물 및 공공 · 기타 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부록1] 지원설비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한 13가지 대상 시설 해당

지원설비	지원범위
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2.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3.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4.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5.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6. 폐기물전처리장치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공정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8.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9.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10.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12.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13. 기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우선적으로 소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감축결과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를 제출하여야 함

환경부